

(B2B구매자금대출-구매기업용)

20 년 월 일

본 인 _____ (인)
주 소 _____

② 기한 전 상환수수료는 면제하기로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3조 제3항에 따라 이자율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6 조 (대출의 변제기)

① 본인은 판매대금추심의뢰서에 기재된 변제기(매매계약서의 만기일)에 은행에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다만, 대출실행일로부터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변제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은 대출실행일의 매월 해당일(해당일이 없을 때에는 그 달 말일)에 대출금의 이자를 상환하기로 합니다.

② 본인은 e-MP를 통하여 은행에 전송되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에 변제기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조치하기로 합니다.

③ 은행은 제8조에서 정한 결제계좌로부터 제1항의 대출원리금 상환일에 통장, 지급청구서 없이 상환대상금액을 인출하여 해당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제 7 조 (구매대금 지급)

은행은 대출이 실행된 후 결제계좌의 잔액 중 추심의뢰금액 상당액을 자동 인출하여 판매기업과 은행이 별도로 정한 입금계좌로 이체합니다.

제 8 조 (구매대금 결제를 위한 이체)

① 본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고, 제7조에 따라 판매기업에 이체할 계좌는

은행 계좌번호 : _____, 예금주 : _____ 인 계좌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계좌는 본 구매대금 결제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합니다.

제 9 조 (대출 거래정지)

은행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대출거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의 B2B구매자금대출 한도가 부족한 경우
2. 본인이 은행의 원리금 상환채무의 일부라도 지체하는 경우
3. 본인에 관하여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의 등록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본인에 대하여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
5. 본인의 B2B구매자금대출이 신용보증기금 담보대출인 경우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본인에 관하여 은행의 여신한도거래약정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서 정한 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은행이 본인의 판매기업 또는 e-MP와 약정을 해지한 경우

제 10 조 (면책)

은행은 e-MP로부터 전송 받은 매매계약내역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에 따라 업무처리를 한 경우 은행의 고실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책되며, 분쟁은 본인과 e-MP 그리고 판매기업 사이에서 해결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정보제공 동의)

본인은 B2B구매자금대출의 이용과 관련하여 은행이 다음의 정보를 판매기업 또는 e-MP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본인 및 대표자의 대출한도·대출잔액·연체내역
2. 본인 및 대표자의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3. 본인 및 대표자의 금융결제원 부도정보

제 12조(적용순서)

이 약정서, 여신한도거래약정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서비스이용약관의 내용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는 이 약정이 가장 우선하고 다음으로 여신한도거래약정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서비스 이용약관의 순서로 적용됩니다.

제 13 조 (기타 특약사항)

본 인 :

(인)

본인은 서비스이용약관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 하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또한, 이 약정서 제11조의 정보 제공에 대하여 동의함.

본 인 :

(인)